

[별첨 자료] 입소비용 및 비급여 항목과 비용안내등

①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 기준표(기준:시설급여 (1일/원) 비급여 산출근거 30일이용시)

구 분		1등급	2등급	3-5등급
요양급여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72,480	67,250	62,00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(1인실)	일 5,000원		
	식재료비(1일급식비(3식))	1식 3,000원 * 3식 * 30일 = 270,000원		
	간식비(1회)	회당 1,000원 1회 * 30일 =30,000원		
	이/미용료등	실비청구		

②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세비교표

구분		본인부담금(30일 기준)		
		일반(20%)	경 감(12%)	경 감(8%)
		25.1.1부터	25.1.1부터	25.1.1부터
본인부담금	1등급	434,880	260,920	173,950
	2등급	403,500	242,100	161,400
	3~5등급	372,000	223,200	148,800
식재료비		(300,000) 1일 :1식 3,000*3회 = 9,000원 + 간식비 1일 1,000원		
합계	1등급	734,880	560,920	473,950
	2등급	703,500	542,100	461,400
	3~5등급	672,000	523,200	448,800

③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

- 가. 기본원칙 :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실제 소요비용(실비) 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불가
- 나. 세부기준 : 식사재료비 - 경관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상급침실이용료 -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수납(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비용협의가능)
- 다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